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관련 고시 개정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 지식재산처 지정 원본증명기관 현황(4곳)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윅,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 매년 기업·공공연 등에서 약 13,000건의 전자파일 고유값이 새롭게 등록중

①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현재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증명서 전자발급 가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 2개 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하반기부터 발급 추진

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25.9~)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042-481-8227)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서 표지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강운석	(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채정목	(042-481-3573)
			주무관	황태현	(042-481-8227)





영업비밀의 개념

통념상 유사한 용어

기술

노하우

기업비밀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함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경제적 유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 되어야 함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대표적 정보

구분	종류	예시
기술 정보	제품·시설 설계도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원료 배합 정보	원료 배합 비율, 배합 순서
	연구개발 정보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경영 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관리정보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쟁분석
	매뉴얼	판매, 홍보, 가격설정, 교육 등 관련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정보들이 성립요건을 갖추었을 때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